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

□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

○ 제1조2(정의),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), 제61조의2(과태료)

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

○ **(신고의무자)**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

※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
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,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, 장애인복지시설(장애노인)종사자,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,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, 구급대의 대원,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,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,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,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,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

○ **(신고방법)**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즉시 신고

* 관련사이트 : noinboho.or.kr
*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,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,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

○ **(신고 불이행시 제재)**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「노인복지법」 제61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7조)

구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과태료 금액	150만원	300만원	500만원

□ 신고자 보호 조치

○ 노인학대 신고자는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

-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
-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
-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,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, ③ 시설보호, 신변경호, 증인 출석·귀가 시 동행,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

□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

○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(「노인복지법」제57조제5호」)

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

○ **(교육의무기관)**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종합병원,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**소속 신고의무자**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**매년 1시간 이상 실시**

> **노인복지법 제39조의6**
> 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**
> ·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**요양병원 및 종합병원**
> ·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**장기요양기관**

○ **(교육방법) 직장교육(자체교육) 또는 온라인 교육**

- (직장교육)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noinboho.or.kr) 등재 PDF 교육교재 및 동영상(시설편 1, 2) 자료 활용하여 **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**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PDF 교육교재 종류	
1	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노인복지시설 설치 담당 공무원
2	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3	의료인, 119 구급대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
4	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
5	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
6	가정폭력, 성폭력 직군 종사자
7	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
8	장애인, 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

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(시설편 1, 2)자료 다운로드 방법	
1	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noinboho.or.kr) 교육자료 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
2	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관련 협회 및 단체[붙임1 참고]를 통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

- (온라인 교육)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(duty.kohi.or.kr) 또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(lifelongedu.go.kr) 플랫폼 활용하여 **온라인 수강 실시**

운영플랫폼	과정명	재생시간	주요내용
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	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	120분	- 인권과 학대의 이해 -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-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-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
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	(공통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	60분	- 고령사회와 우리의 문제 - 누구나 나이 든다. - 존중과 배려 - 노인 학대 예방 - 함께하는 우리,나비새김
	(시설종사자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120분	- 노인 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케어 - 노인 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-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의 이해 -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대처 방안

* 운영 플랫폼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시 수료증 발급

○ **(교육실적제출)**

- **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**→**시·군·구**(각 시설 담당부서)→**시·도**(노인보호 사업 담당부서)→**보건복지부**(노인정책과)

- **요양병원·종합병원**→**시·군·구**(의료기관 담당부서)→**시·도**(의료기관 담당부서)→ **보건복지부**(노인정책과)

  * 제출경로, 제출·취합부서 등은 **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**

○ **(제출서식)** 교육의무기관 [붙임2] 제출, 시·군·구 및 시·도 [붙임3] 제출

  *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[붙임2]는 **시·군·구에서 자체 보관**

□ 행정사항

○ **(지자체 교육의무기관 담당부서)**

- 시·도, 시·군·구에서는 **교육실적제출 의무기관에 교육실시 독려 및 결과 제출 안내**

· 시·도(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)→시·군·구(각 시설 담당부서)→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

· 시·도(의료기관 담당부서)→시·군·구(의료기관 담당부서)→요양병원·종합병원

붙임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의 **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**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**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**,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** 및 제7조에 따른 **노인복지상담원**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**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**
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**가정폭력 관련 상담소** 및 **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**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**사회복지전담공무원**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**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**
6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**장기요양기관** 및 제32조에 따른 **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**
7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8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9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**성폭력피해상담소**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**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**
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**응급구조사**
12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**의료기사**
1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**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**
14.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**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**
15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**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**

붙임2 **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(양식)**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

시설 또는 기관명			
소재지 (시도 및 시군구)		시설 또는 기관장명	
교육일시		교육장소	
교육대상	*기관내 신고의무자수*	이수인원	*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*
이수시간	*교육실시 시간*	교육방법	*집합교육, 시청각자료 교육, 사이버교육 등 선택*
<현장사진> *※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*			

붙임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관 현황

연번	시도	시군구	기관유형	총기관수	이수기관현황		미이수기관현황	
					교육이수 기관수	교육이수 인원수	교육미이수 기관수	교육미이수 인원수
예시	*서울시*	*종로구*	*노인복지시설*	*10*	*10*	*100*	-	-
예시	*서울시*	*종로구*	*종합병원*	*9*	*9*	*90*		
예시	*서울시*	*종로구*	*장기요양기관*	*8*	*8*	*80*		